

「구미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의 사망 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공영장례의 목적 및 정의,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3조)
- 공영장례의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제7조)
- 공영장례의 업무대행 및 점검에 관한 사항(안 제8조~제9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조
-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- 합 의: 정책기획과, 예산재정과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의 사망 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공영장례란, 장례의식 없이 시신이 ‘처리’되지 않도록 공공(公共)이 무연고사망자 및 저소득시민에게 감소한 장례의식을 직접 제공하거나, 또는 이러한 장례의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고인이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존엄성을 유지하고 유가족과 지인 등이 고인을 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례를 말하는 것으로,
- 1인 가구 증가와 가족해체·경제적 빈곤 등으로 가족 및 사회적 관계가 취약해지면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사망자 등의 평안한 영면을 돕기 위해 공공에서 최소한의 장례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본 조례안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집행기관에서는 공영장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전환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면밀한 사전협의 및 체계적인 매뉴얼 마련을 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, 시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.